

|              |                    |
|--------------|--------------------|
| 의 안 번 호      | 제889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25. . .<br>(제 회) |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

#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889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김종필, 이상식, 김현문,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이정범

##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고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공모사업의 충청북도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안 제6조)
-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조)
- 공모사업에 관한 도의회 보고(안 제9조)

## 3. 조례안 전문 : 불임

##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불임
- 비 용 추 계 : 불임
- 협 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통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실정에 맞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역할 및 업무추진 절차
  4.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고려하여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령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도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 등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도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모사업 진행상황, 상시 관리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 유치 및 선정결과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정보 유출 우려 등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각 호 중 각 목 생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8. 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제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